

# 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공고

소공인의 국·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「2018년도 소공인 제품 판매 촉진 지원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8년 2월 12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

## 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 :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

□ 지원규모 : 300개사 내외 (사회적 경제기업 해당 소공인 20개사 포함)

구 분		모집 시기	지원 규모	지원 한도	사업 기간
일반 소공인	1차	2.12(월) ~ 3.7(수)	180개사 내외	3천만원 이내	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
	2차	4.2(월) ~ 4.20(금)	100개사 내외		
사회적경제기업		2.12(월) ~ 3.9(금)	20개사 내외	1억원 이내	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

□ 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 지원(정부보조 80%, 소공인 자부담 20%)

□ 지원내용 :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

○ 사업정산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선 지급·후 정산 방식으로 개선하여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

○ 소공인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\*을 선정, 판로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(20개사)

\* 사회적경제기업 해당 소공인 20개사의 세부 모집내용은 **[붙임2]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사업신청 안내**를 참고하여 신청

-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%이내로 지원하고, 소공인 자부담 비중은 최소 20% 이상

**<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항목 >**

(단위 : 백만원)

지원항목	지원내용	지원한도	보조율
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	국내외 온라인 몰 및 오프라인 몰(아울렛, 대형마트, 전문매장 등) 신규 입점비* 지원 * 등록비, 판매수수료, 기획전·광고비, 물품임차비 등 ※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입점지원 각 5백만원씩 지원가능	5	80%
전시회 참가	국내외 전시·박람회 참가비(부스임차료, 부스장치비 등)	10	
홍보영상제작	홍보동영상, 홈쇼핑(SB광고 포함), 방송광고(PPL 포함)	10	
디자인 개발	카탈로그(종이/전자), 포장, 제품, 상품페이지 디자인	5	
인증획득	KC인증,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	5	
교육·컨설팅	무역교육, 국내외 시장조사,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	5	
해외배송	EMS, K-packet, 항공특송, 배송 대행비 등	5	

※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세부내용은 **[붙임1]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범위 및 신청서식**을 참고하여 신청

## 2. 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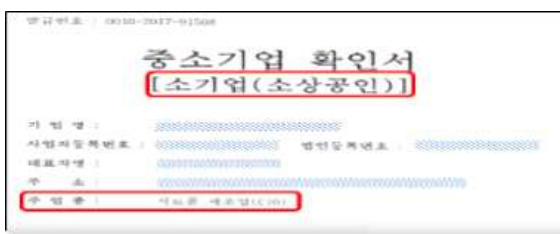
지원대상 : 소공인(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)

자격요건

-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
  - (기업규모)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
  - (주업종)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지원 대상 업종 (19개 제조업)에 해당
  - (업태)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

**< 소공인 확인 방법 >**

소상공인확인서(기업규모, 주업종)



사업자등록증명(업태)



○ 단, 신청일 현재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
구분	내용
제외업종(5)	1. 담배 제조업, 2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, 3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, 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5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* 이외 유흥,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업종은 지원 제외
휴·폐업 및 부도	• 접수 마감일 현재 「기업의 부도, 휴·폐업」 중인 경우
세금 체납	•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불공정행위	•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
기(既) 참여	• 동 사업에 선정되어 판로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

### 3. 신청방법

#### □ 신청기간

- 소공인 : (1차) '18. 2. 12(월) ~ 3.7(수) 18:00까지  
(2차) '18. 4. 2(월) ~ 4.20(금) 18:00까지
- 사회적경제기업 : '18. 2. 12(월) ~ 3.9(금) 18:00까지

#### □ 신청방법 : 온라인(e나라도움)을 통해 신청 · 접수

#### □ 신청서류 :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

구분	신청서류	필수	해당시	비고
1	신청서	1부	-	[붙임1]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
2	제품설명서	1부	-	[붙임1]참조, 작성방법 확인 필수 ※ 회사소개 및 제품 카탈로그 있을 시 별첨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1부	-	[붙임1]참조
4	사업자등록증명	1부	-	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※ 발급방법: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( <a href="https://www.hometax.go.kr/">https://www.hometax.go.kr/</a> )
5	소상공인확인서	1부	-	기업규모, 주업종, 유효기간 확인 필수 ※ 발급방법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( <a href="http://sminfo.smba.go.kr/">http://sminfo.smba.go.kr/</a> )
6	국세 납세증명	1부	-	유효기간 확인 필수 ※ 발급방법: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( <a href="https://www.hometax.go.kr/">https://www.hometax.go.kr/</a> )
7	지방세 납세증명	1부	-	유효기간 확인 필수 ※ 발급방법: 동사무소 방문 또는 민원24 이용 ( <a href="http://www.minwon.go.kr/">http://www.minwon.go.kr/</a> )
8	가점사항 증빙서류	-	각1부	가점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

- 기타 :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사업신청→사업등록→교부→집행→정산→반납→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필수

## 4. 평가절차

### □ 평가방법

- 소진공이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등의 서류검토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선정
- (서류검토)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충족여부,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등 검토
  - \* 신청자격 미충족, 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
- (평가위원회 구성) 상품기획자(MD), 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소공인(과제책임자)의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평가 결과로 선정
  - 대표 또는 담당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, 업체별 평가시간은 20분으로 제한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)

## 5. 가점(안)

구분(점수)	가점기준	증빙서류
1 일자리 안정자금수급기업 (5~10)	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기업인 경우, 5점(1인), 7점(2~3인), 9점(4~5인), 10점(6인 이상) 부여 ※ 제외기업 : 신규채용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 ① 사업주의 배우자 ② 사업주의 직계 존·비속 ③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결정통지서</li> <li>- 수급인원 확인자료(급여대장 등)</li> </ul> </li> </ul>
2 고용실적(5)	직전연도 신규채용 2명 이상이면서 현재 고용유지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※ 제외기업 : 신규채용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 ① 사업주의 배우자 ② 사업주의 직계 존·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)</li> <li>※ 발급방법 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 이용</li> <li>■ 제외기업 미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</li> </ul>
3 숙련기술인(5)	①전국소상공인대회 수상자(국무총리 표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표창 사본</li> </ul>

구분(점수)	가점기준	증빙서류
	이상) ②소상공인기능경기대회 수상자(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이상) * 우수 숙련기술인 기능경연대회 포함 ③대한민국명장 명장(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) ④우수 숙련기술자(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) ⑤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(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상장 사본</li> <li>■ 명장증서 사본</li> <li>■ 증서 사본</li> <li>■ 상장 사본</li> </ul>
4	수출실적(5) 최근 3년간 직·간접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인 경우 5점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2015년, 2016년, 2017년 3개년 수출실적증명</li> <li>- 직접수출 :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(수출자 조회)</li> <li>- 간접수출 : ㉠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(제조자조회) 또는 ㉡외국환은행발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</li> </ul>
5	창업경진대회 선정기업(5)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선정기업인 경우 5점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출불요(공단에서 자동부여)</li> <li>※ 단,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</li> </ul>
6	집적지구 소공인(5)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(지정기준)내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인 경우 5점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출불요(공단에서 자동부여)</li> <li>※ 단,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(집적지구 해당여부 확인방법 :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-12호 참조)</li> </ul>
7	지식재산권(2)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) 등록 실적 1건 이상 있을 시 2점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등록증 사본</li> </ul>
8	첫걸음 소공인(5) 동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(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)인 경우 5점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출불요(공단에서 자동부여)</li> <li>※ 단,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</li> </ul>
9	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(5) 현재(사업 신청일 기준) 소공인특화자금 활용기업인 경우 5점 부여 *단,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활용 기업에 한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금융거래확인서</li> <li>※ 발급방법 :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</li> </ul>

※ 가점한도는 최대 10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명시 필수

## 6. 유의사항

- 신청서,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,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,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공인의 책임

-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, 신청자 미확인·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
-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
- 사업기간(협약기간)은 단축·연장 요청할 수 없으며, 협약변경(지원 항목 및 사업비 변경)은 1회에 한함
- 사업비는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, <http://www.gosims.go.kr>)을 통해 교부·집행·정산
-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e나라도움 가상계좌에 자부담금을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시 선정·지원 취소
-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·지원 취소

## 7. 접수·문의처

**접수** :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

구분	제 출 처	비고
e나라도움	○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<a href="http://www.gosims.go.kr">www.gosims.go.kr</a>	1670-9595

\* 회원가입(대표자 명의)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

\* 공고 이후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, 사업등록,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(1670-9595)를 통해 확인요망

**문의처**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공인지원실)

구분	담 당 자	전 화	이메일
일반 소공인	백지혜 주임	042-363-7909	make18@semas.or.kr
	강지운 대리	042-363-7903	
	김민수 대리	042-363-7911	
사회적 경제기업	이승우 주임	042-363-7723	-

구분	지원항목별 기준 및 범위	단가(만원)		
		정부보조	자부담	계
1	<b>온라인몰 신규입점</b> * 지원기준 : 종합쇼핑몰, 전문쇼핑몰, 소셜커머스, 오픈마켓 * 지원범위 : ①제품등록비, ②판매수수료, ③상품페이지 디자인비, ④온라인몰 내 광고·프로모션비, ⑤판매대행비(해외 온라인몰에 한정)	500	125	625
2	<b>오프라인 매장 신규입점</b> * 지원기준 : 백화점, 아울렛, 대형마트, 전문매장 * 지원범위 : ①판매수수료, ②집기(진열대, 캐노피 등) 임차비, ③판매인력 인건비(1인)	500	125	625
3	<b>전시회 개별참가</b> * 지원기준 : 주 목적이 기업 및 제품의 홍보·전시·판매인 행사로 타부처·지자체의 재정보조 없이 단독부스로 참가하는 전시회 * 지원범위 : ①부스임차비, ②부스장치비(테이블·의자·카타록 스탠드 등 집기임차비, 조명·인터넷·급배수 등 부대시설 사용비), ③제품운송비, ④왕복(국내↔해외)항공운임비(1인)	1,000	250	1,250
4	<b>홍보동영상 제작</b> * 지원기준 : 기업·제품 홍보용 5분 내외 동영상 * 지원범위 : ①시나리오, ②번역(원어민 감수), ③촬영, ④조명, ⑤음성더빙, ⑥음악·미술·편집비	1,000	250	1,250
5	<b>TV방송광고</b> * 지원기준 : 홈쇼핑, 지상파·케이블 * 지원범위 : ①홈쇼핑 송출용(SB광고 포함) 영상 제작비, ②홈쇼핑 판매수수료, ③TV 송출용 광고영상 제작비, ④광고영상 TV송출비, ⑤TV PPL 광고비			
6	<b>디자인 제작(인쇄 제외)</b> * 지원기준 : 카탈로그(종이/전자), 포장, 제품, 상품페이지, 제품(사용)설명서 디자인 * 지원범위 : ①기획, ②촬영, ③번역(원어민 감수), ④디자인, ⑤인쇄필름(제판본)	500	125	625
7	<b>인증획득</b> * 지원기준 : KC인증(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 확인), 해외규격인증 * 지원범위 : ①인증비, ②시험비, ③심사비, ④컨설팅비(인증대행비)	500	125	625
8	<b>교육·컨설팅</b> * 지원기준 :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한 무역교육, 시장조사, 판로개척 컨설팅 * 지원범위 : ①임직원 무역교육 수강비(수강비 환급과정 제외), ②시장조사 용역비(현지수요, 바이어 및 경쟁제품 현황 등), ③판로개척 컨설팅 용역비(수출 및 마케팅 전략, 연차별 시행계획 등)	500	125	625
9	<b>해외배송</b> * 지원기준 : 수주제품에 대한 해외배송비(국내→해외) * 지원범위 : ①EMS, ②K-packet, ③항공특송, ④배송대행비	500	125	625